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1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김**	김** 1949-08-05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	무단전출
천**	천** 1962-05-22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	무단전출
천**	천** 1991-06-16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	무단전출
천**	천** 1988-08-13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9-05-20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59-08-09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이**	김** 1964-06-13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이**	이** 1986-03-03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지 은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의전화 : 032-560-335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2016년 01월 04일

검단4동장 인

